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4 선고 2023가단52286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8. 21.

판 결 선 고 2024. 9. 4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2021. 2. 8. 및 2021. 3. 5. 체결된 증여계약을 36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6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14. 자 2022차전300500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54,482,239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,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E, F호의 매수자금으로 2021. 2. 8. 1,100만 원 및 2021. 3. 5. 2,500만 원 합계 3,6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한나라